

제42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9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8)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상정된 안건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 2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 2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2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 2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 2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 2
- 

(10시10분 개의)

### ○소위원장 이원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소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산림청, 오후에는 농식품부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장 임상섭

오늘 정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법과 이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을 통합해서 심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번 국회 회기 때부터 준비해 왔던 안인데 이번 국회 때 다시 처음으로 소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정해서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에 피해가 한 명이라도 줄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10시12분)

###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산림재난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이 많아 가지고 심사자료하고 조문자료 2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번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총괄적인 검토를 했고, 5번 이하에서 주요 조문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총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입니다.

최근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으로는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안들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관리 정책의 종합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 등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산불 관련 규정에서 산림인접지역도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의 산불조사와 소방청의 화재조사 간 업무충돌 우려가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병진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수용의견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산림재난자율감시단 등이 타 법상의 조직, 제도 등과 중복된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법률에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청 수정의견은 세 번째 대시입니다.

안 제22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전라남도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의 산사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중에 산림에 잇닿은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 밖이므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입법 공청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항은 10페이지까지 정리했는데 지난 소위 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 구성에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안은 재난관리 단계별로 조문을 배열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인데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림청 외에 산림청 소속 기관인 산림항공본부 그다음에 산림항공관리소를 포함하고 있고 산림재난별로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역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관 등 다소 나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을 간단하게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각 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각각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대책본부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14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쪽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주요 사항을 표로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정희용 의원안과 이병진 의원안의 장·절·조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입니다.

법 제명과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결성을 위해서 정희용 의원안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구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희용 의원안이 산림재난관리 단계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정안들의 입법 목적이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희용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제정안에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는 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을 보시면 재난의 관리 단계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에 ‘대비’는 포함하고 ‘복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산림재난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약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이해 가능성 등 측면에서 이병진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설립을 기존의 공공기관 등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단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3조를 추가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 제정안을 심사할 때 산림재난 관련 법률이 지금 산림보호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해당 내용들을 조문별 내용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총괄적인 내용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 법안심사의 전체적인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했고요. 또 아까 양당 간사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 법안심사 일정은 오전 중에, 점심시간이든 아무튼 1시 이전에 법안심사를 끝내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심사 안건 중에 9번 항까지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까지 최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필수농자재법하고 한우법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잡는 선으로 해서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까지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쟁점이 많아서 9번까지 심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튼 1시 이전에 끝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심사할 수 있는 데까지 심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려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법 제명이라든지 조문 구성, 산림복원 삭제 관련된 내용 또 대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산림재난 대응단과 관련해서 뒤에 조문별로 검토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혹시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조문별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조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조문별 검토 일괄해서 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목적 규정입니다. 조문자료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제정 목적에 복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재난안전관리법상 그 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산사태에다가 토석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방사업법 등과 다르게 정의할 경우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토석류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병진 의원안 중 산림재난피해지에 대한 정의가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국고지원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안 중 산림재난방지를 정의하면서 산불방지,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약칭하고 있는데 입법경제 측면에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산림재난방지의 개념적인 요소로 예방하고 대응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의 전주기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정의와 관련해서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산림청 소속기관을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법 문언의 경제성 측면에서 이병진 의원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병진 의원안 중에서 국유림관리소는 지방산림청의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것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 규정을 통해서도 위임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제정안들은 복구라는 용어를 ‘재난피해지를 시급히 안정화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복구는 5년 계획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시급히’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조문자료 1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 외에 산림인접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림에 잇닿은 토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에 잇닿은 토지라는 경우가 그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방사업법상의 산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이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이병진 의원안은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상 체계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취지가 산림재난의 통합·관리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병진 의원안은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때 절차와 중복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이병진 의원안은 산림재난을 총괄하는 중앙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정희용 의원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인데 이 사항을 정희용 의원안에서는 강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항은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6쪽입니다.

원쪽 박스 부분입니다. 정희용 의원안은 지역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용할 경우에 유사 조직의 중복 설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의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정희용 의원안은 산림재난별로 지원인력을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운영하려는 것이고 이병진 의원안은 지역주민 등으로 자율감시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인데, 정희용 의원안의 경우 재난별 특성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의 통합·운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병진 의원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율방재단과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조문자료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림인접지역을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인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및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병진 의원안은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산사태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 관한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서는 57쪽의 법제상 보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최근에 통과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0쪽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64페이지까지 보고하고 심사하고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예, 알겠습니다.

60쪽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와 61쪽의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에 대하여서도 법제상 보완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전문위원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조금 검토가 필요하거나 저희 의견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안 제4조입니다. 안 4조로 되어 있고 제2호 산사태 조문의 적용범위는 산림과 잇닿은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산사태의 경우에는 산림만 적용범위로 하고 잇닿은 토지 확대하는 거는 제외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작년도 경북지역 산사태 지역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만 11건이 났는데 5건 정도가 산림과 연접한 농지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택지와 관련된, 발생도 됐고 피해도 거의 같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적용범위를 산림과 잇닿은 토지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검토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7페이지의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재난자율감시단 두 가지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희용 의원님의 안 제13조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을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안에서는 이것이 산림재난대응단을 삭제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뒷 페이지 4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요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왼쪽의 구분을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단 여기가 산불입니다. 대부분 다 연중 6개월 정도 고용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산사태현장예방단은 5개월 정도 고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한 10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한 개 각 분야만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산불재난기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

들어 주시면 현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력들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삭제하지 않고 정희용 위원님안처럼 재난대응단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해제에서 말씀했는데, 산사태의 적용범위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산사태 적용범위에 산림 및 연접된 잇닿은 토지까지 해 주시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검토안은 산지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산지 및 연접된 토지에 있는 지역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의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서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만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어서 이것도 잇닿은 산지와 잇닿은 지역에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64페이지까지인데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청장님, 산림재난방지법안이 시행되면 재선충병 예찰체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현재 예찰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개월 고용하는 이런 분들의 인원이 한 375개단에 1500명 정도가 있는데 통합돼서 운영되면 연중 인원이 한 6800명으로 늘어나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하자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수도권 같은 데는, 우리 지역구가 상당히 위험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역구이신 양평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봄철에 따로 운영하고 또 산사태 기간 되면 산사태예방단도 또 따로 운영하고 있고 또 재선충 병해충 시즌에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묶어서 하면 훨씬, 동일한.....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 병해충 방제 이런 것 다 통합해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 재난과 관련된 거는 묶어 가지고 다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재난방지기관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만 해 주시면 시장·군수의 재량껏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입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었는데 당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수를 좀 줄이고 효율화를 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공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을 밝혔었고

그러다가 2월 달 쯤에는 기재부에서 수용을 했지요. 그 협회가 2개니까 줄어들고 공단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협회의 수를 따지면 줄어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동의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국회 선거가 오고 하면서 회의를 못 열어서 논의를 더 못하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과 과정을 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녹여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뒤에 조문별로 기술공단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새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두 개의 공공기관과 하나의 특수법인, 민간단체지요. 3개를 합쳐서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별도로 늘리지 않고 3개의 단체나 협회를 합침으로써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낼 수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를 설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 일단 알겠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재난안전기본법을 만들면서 기초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각 개개의 법률에 다 퍼져 있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재난안전기본법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당시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된 이후에 재난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각각의 개개의 재난·재해별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들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행안부하고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견을 다 해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도 재난안전기본법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데 대개 많이 수정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다 동의를 했고 행안부하고도 지금 여기 나온 수정의견안에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금주 위원 근본적인 게, 중요한 게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산불이나 산사태나 병충해나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법 만들어 가지고도 과연 줄어들 수 있는지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 법이 없어서 산불이나 산사태나 병충해가 발생된 건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이 잘못하면 그냥 규제만 더 만들고 또 공공기관 하나 더 설립하고 산림직 관련한 정원만 더 늘어나는, 그리고 지자체마다 부담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보니까 또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을시키고, 지금 세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제일 중요한 게 산불 예방하고 산사태 예방하고 병충해도 줄어들어야 되고, 과연 그 목적 달성을 청장님이 담보 할 수 있는 건지 난 그게 의문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울진·삼척 산불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제일 크게 났었고요, 최근에. 23년도에, 작년에 산사태 때문에 열 분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이 후회했던 것들이 뭐냐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인명은 어느 정도 구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대피명령을 하도록 지자체장한테 요청하는 그런 제도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산림청에서 산림만 계속 신경을 썼는데 기후변화라든지 이게 대형화되면서 발생지로부터 피해지까지 산사태가 토석류라 그래서 2km까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산림 하나 가지고만은 복구명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행정명령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를 2개의 큰 재난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최적화된 안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생되는 거를 낮추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지만 인명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대피명령 같은 경우도 지금 근거규정은 없어도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피 다 시키고 하는데……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도 제가 상황실장을 할 때 지자체에다가 대피명령을 내려 달라고…… 이때까지는 산림청장이 대피명령과 관련된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재난안전 기본법상의 요청만 했는데 지자체에서 부단체장들이라든지 계속 얘기하는 게 산사태가 나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기껏 대피시켜 놓고 산사태가 안 났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명령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방지법에도 있지만 재난방지법에 산불이나 산사태의 책임기관은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지자체장에게 ‘산불이 어느 지역에 났으니까 강제대피명령을 시키세요’라는 그런 권한, ‘시키세요’라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상당히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단체장들이 책임지고 지금 인명사고가 나면 단체장들이 요즘 엄청 책임을…… 주민들의 어떤 책임 소재 그런 부분이랄지 대피를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피를 안 시켜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는 엄청 책임을 따져 묻는 건데 그거를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민원 발생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국정감사 때 산사태상황실에서 다 보셨다시피 산사태가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될 거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 산림청 상황실이 제일 빠릅니다, 기상정보라든지 산림정보라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명령과 관련된 거를 빨리 의사판단해서 빨리 요청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도 산사태 때문에 대피명령이라기보다는 대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피 안 해서 피해 입으신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산사태 중앙재해실장을,

담당 실장을, 상황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이 여기 법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홍수가 나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피 방송을 하고 몇 차례 해도 어르신들이 ‘지금껏 여기 물이 넘친 적은 없다’ 하시면서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경찰, 소방, 공무원 총동원을 해서 가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피난은 시켰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명령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 걸 봤거든요.

아마 산사태의 경우도 주민들이 쉽게 이렇게 ‘왜 여기가 산사태가 나? 산사태 안 나.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명령이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면 아마 그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그분들을 피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지금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법 체계를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 여기에 대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입법 체계상으로 보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세 가지를 일단 산림재난으로 보고 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각기 세 가지 재난 유형에 따른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툴(tool)들을 어떻게 보강하겠다 이 내용이 먼저 제시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재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좋으냐, 현재 주어져 있는 입법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보강된 내용을 담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묶어 놓고 각기 막 얘기해 놓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지금 산불이나 산사태나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재난 유형이 달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과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산림재난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각 재난별 현재 취약점이 뭐여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강을 해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점이 일차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형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입법적으로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해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입법 내용을 좀 섬세하게 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묶어 놓고 얘기를 하니까 부분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처 지금 의견들을 다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산사태나

산림병해충은 산림청의 독자적인 영역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그거는 어차피 주체가 산림청이니까—산불과 관련된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소방 부서하고 업무 체계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의 여부가 또 다른 영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견 산림청에서 소방서의 입장이나 이거를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느 순간에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의구심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협의해야 하는 내용 속에 담겼는지, 특히 주관을,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협조기관이 되는 건지, 어느 순간에서 주체가 되고 전환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관련된 입장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산림청 입장에서는 소방 관서를 산림, 산불 그러면 협조기관으로 하고 통제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이원택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이 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법이 통합적으로 제정돼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인력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 인력과 조직, 장비와 관련된 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산사태 재난 따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거든요. 산림재난이라는 게 산림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접된 지역도 같이 해야 되는 그 확장성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강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약간 규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강제성입니다. 강제명령이라든지, 과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좀 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거 플러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좀 강제명령이라든지 피해복구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강제돼서……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제정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현행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보강해서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불의 주관, 재난 주관 책임 부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에 산림청장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산림청이 산불재난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산불이 실제로 났을 때 끝 때의 현장 지휘 책임은 사실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커지면 시도지사, 또 커지면 시도지사가 1개 시도가 아니고 커졌을 때는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방청의 역할은 현장통제단이라는 거를 지휘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난 산불 진화에 대해서 하고 인명피해나 주민 대피와 관련된 것은 소방청에서 나온 지역통제단이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소방하고 산림청하고의 산불과 관련된 룰(role)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안에서 소방청하고 의견이 있었던 거는 산불이 났을 때 조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의견이 있었는데 소방청에서 수용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설명을 해서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체계로, 왜 그러냐면 산불이 산에서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에서 인접된 가옥에서 굴뚝에서 날아가 가지고 나기도 하고 공장에서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산림 분야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소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자료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건물, 가옥으로, 가옥이나 건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에서 발화된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협조를 해야 되는 체계고 지금 이 법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좋은데 그 내용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용은.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했을 때 지금 이 별도 입법 체계를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나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48쪽 보면 실제 각기 이렇게 묶으면 지원 인력을 통합해서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림재난대응단 신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한 6~7배 더 추가적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 설명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난의 유형이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이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은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대응하는 교육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만 동원하면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입법적으로 이 내용을 제정하기 위한 논리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각기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조직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때 시너지 효과가 어째서 발생한다는 내용을 좀 제대로 내야지, 그냥 막연히 숫자가 많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도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개월, 산사태현장예방단 5개월, 병해충예찰방제단 10개월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 다 재정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하다 보면 윤준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짜로 산림재난 분야에 조금 더 심화된 업무라든지 역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일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대응단이라고 상시적으로 산불·산사태·병해충을 연중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현장에서 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젊고 또 여기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시장·군수, 시군에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각기 돼 있는 내용은 다 엉터리라는 얘기네.

○산림청장 임상섭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장단이 아니고 실제 실효적이지 않은 내용 가지고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소위원장 이원택 같은 쟁점인데 임미애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으로.

○임미애 위원 아니요, 그것 아니고 다른 건데요.

34쪽에 보면 산사태의 범위에서 토석류를 제외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발생한 산사태 발생 건수를 보면,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토석류에 의한 피해가 많지 산사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산지와 연접한 민가에서 발생한 그 원인 때문에 산에 피해가, 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토석류를 굳이 제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방사업법에 보면 어차피 토석류도 사방사업법에 같이 집어넣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이유는 산사태로 인해서 토석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석류를 포함시키는 건데 굳이 이 법에서 토석류를 제외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병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는 토석류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내용을 빼는데 저희도 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왜 동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현재 사방사업법에 토석류라는 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법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결정적으로 토석류라는 정의를 여기에 넣어도 하단부에, 이 이후에 토석류와 관련된 법 조항이 없고 그래서 이 정의를 여기에 해도 실효적으로 큰 실익이 없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토석류라는 게 발생 원인이 산사태로부터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사태로 해도 상관이 없고,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뿐만 아니고 산지에 잇닿은 토지만 포함을 시켜 주면 토석류와 관련된 문제는 정의하지 않더라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런 해석으로 해서 토석류를 제외해도 민가에 발생하는 피해까지 대응이나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정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민가에 끼친 영향이 산사태가 원인이라기보다는 토석류가 원인입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산림청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석류가 발생한 건 염밀하게 말하면 원인이 산사태로 직접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사태가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토석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산사태가 원인이 되어서 토석류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산사태의 원인 없이도 토석류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또 따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산지와 인접한 민가에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산림

재난방지법안의 목적이라면 저는 토석류를 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민가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토석류에 대한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도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할 때 삭제가 되더라도 사방사업법에 토석류라는 정의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한 거고요. 제 의견은 이 법안 안에 토석류 정의가 들어가도록,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또 생길 여지가 있어서요.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청장님, 산림과 잇닿은 지역을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일단 사례가, 산불에 그 내용이 있고요.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과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토지 해서 100m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에 잇닿은……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산림인접지역이라고 하는 4조 적용범위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과 잇닿은 지역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런데 지금 읽어 주신 그 내용은 산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산사태의 적용범위는 100m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입니다. 산지와 산지에 잇닿은 토지……

○**임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체계상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10조를 보시면 ‘건축허가 등의 협의 등’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 밑에 있잖아요. 100m 이내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산림과 잇닿은 지역이어서. 그러면 도심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골에…… 시골뿐만 아니지요. 도시도 마찬가지지요. 100m 이내의 건축허가 등에 협의를 거치게 되면 이건 정말 국민들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업무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에 제시한 것 중에 10조 1항을 아예 빼고 2항·4항을 오히려 살려 놔서, 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직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행정기관이 함께 협의를 거쳐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도록 할 게 아니라 2항·4항을 그냥 살려서 행정기관 간에 서로 자료의 공유라든가 협조체계라든가 이런 정도로 담아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읽어 보세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이것 할 때는 행정기관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제한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골에서 시장·군수들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들을 하나도 못 해요. 행정이 마비되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소방법하고 비교하셨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건물 내의 화재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청장 임상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잇닿은 지역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산림재난방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남도에서 그게 과도하다 그래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아니고 지방산림청, 산림청 특별행정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의견을 그렇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보시면 울진·삼척 때도 산림에 연달아 잇닿아 있는 가옥이 400채 이상이 탔습니다. 강릉 산불도 300~400채 정도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하면 소나무라든지 침엽수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물의 배치를 잘 조정만 하거나 아니면 산림에 있는 침엽수 같은 것을 잘 제거만 했었어도 가옥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주택의 입지 패턴을 보시면 대부분 계곡과 입구나 주위에다가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봤을 때 산사태에 굉장히 치명적인 입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건축허가를 할 때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시장·군수들이 직접 하도록 법안 초안을 그렇게 의원님들이 내 주셨는데 그게 시도에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지방산림청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샘플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인접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특별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산지전용하는 단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왜 그러냐하면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별도로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이 재해와 관련된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대한 국민 불편도 덜어 드리고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 ○임호선 위원

그런데 법에는 여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의도를 하셨다고 하지만 법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 내신 삭제로 돼 있는 2항·4항을 살려 놓으면 1항처럼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방산림청에서 미리 협의할 때 그 권한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축·재축·대수선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돼 있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도저히 여기는 안 돼서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을 좀 변경해서, 짓더라도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런 건데, 그런데 거기에 기존 건물에서 또 살아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개축을 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럴 텐데 그것을 추가로 주변 상황 뭐를 정리하라 내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지방산림청에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가 옳은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약간 고민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위원장님, 신축·증축·개축 이렇게 쭉 써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건축허가나 협의를 할 때 규정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아마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산림에 연접된 지역에 한해서 검토를 할 때는 ‘이것은 계곡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하는데 그쪽으로 나온다든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명 피해가,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프로세스가 아니고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좀 한정을 해서 줄여 주시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게,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잘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지자체의 조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통합되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여기 뒤의 조문 검토할 때 또 나올 텐데요. 관련된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사태대응팀.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산불, 산사태, 병충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정원 관계도 뒤따르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있고, 이게 아주 공직자들이 상당히…… 산불 하나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름철 같은 때는 산사태 나면 다른 업무를 아주 전폐하시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하고 해서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산림청장 임상섭** 그런데 여기 행안부 의견도 있지만 신규로 조직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해서 설치라는 용어를 바꿔서 ‘구성’, ‘운영’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지만 저희들이 항상 재난이나 산불이나 산사태, 재선충이 심해서 지자체 시군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산림청이 대표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 지자체에 산림, 재선충 관련된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통상적인 프로세스는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효율적으로 전문화된 인력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단도 만들고 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만들어서 산림청과 산불방지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해 줌으로써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 법안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그 기술공단이 훈련기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산림재난기술 관련된 타당성평가라든지 평가시설……

○**문대림 위원** 아니, 산림재난인력 관련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들이 협력 및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지휘체계 이것이 결국 신속한 대응을 저해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한다면 통합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문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둔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약칭 ‘공단’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

○**문대림 위원** 그러면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한 기술공단에서 이들에 대한 훈련 역할, 통합지휘체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내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공단의 업무 중에 산림재난 방지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국립 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짓고 있어서 이 훈련과 관련된 것은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4개의 단체에서 나름대로 개별 단체마다의 전문성들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체계, 어쨌든 복잡한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염려는 없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것은 공단의 조직을 설계할 때 그와 관련돼서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산사태, 병해충처럼 재난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업무별로 나눠서 좀 더 전문성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설계를 했습니다.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안은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대응체계에 빈틈들이 많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들을 없앨 수 있는,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 지적들이 사라질 것이다? 글쎄……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지금 우리가 또 심사해야 할 법안이 뒤쪽에 좀 남아 있으니까 박덕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명을, 문금주 위원님도 현재까지 해서 한 말씀

더…… 그러면 세 분하고 쟁점을 남겨 놓고 또 그 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법안은 오늘 결론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 산림과 잇닿은, 이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목이 예를 들어서 임야로 되어 있고 임야에 붙어 있는 대지, 농경지, 구거, 하천 그런 걸 말씀……

○**박덕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은 거의 산림 잇닿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전부다 했던 집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신축·중축·개축·재축·이전 이것을 허가할 때 제한을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상당히, 도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 산림청이나 다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허가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특히 농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임호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자체한테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또 아까 얘기했던 귀농·귀촌들이 오면 물가에 또 산세가 좋은 데 이런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제한도, 또 막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잘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세부적인 기준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거기에 한정돼서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박덕흠 위원** 그건 안 되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또 우리 손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신뢰하기가,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 나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또 강화되거나 그러면 사실 산촌에 계신 농민들, 임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주 핵심 쟁점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니요, 다음번에 질문하면 돼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청장님, 여기 전반적인 내용 보면 제가 조문을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상당히 많은 의무를 부여해요. 그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재난별로 필요한 인력·장비·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부담을 다 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어찌 됐든 산림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지방한테는 의무를 다 부여해 놓고 예산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비용의 일부를, 절반을 분담한달지 그래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좀 줄여 주는 노력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지방은 의무를 다 해 놓고 여러분들은 기재부에서 예산 해 주면 도와주고 안 그러면 못 도와주고,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청이 이런 재난 관련해서 지자체한테 부담, 매칭을 얼마나 해 주고 있나요? 예를 들면 헬기 같은 것 지원 얼마나 해 줘요?

○**산림청장 임상섭** 헬기는 정부에서 없습니다. 지자체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김선교 위원** 아니에요. 50% 법 개정돼서 됐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타당성평가라든지 이런 건 다 돼 있는데요. 현재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헬기임대사업을 국비 하나도 안 준다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그런 지역에서는 작년입니까, 전국에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헬기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진화를 못 하는, 넋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 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헬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상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부담한다라는 형태로 가 줘야지 왜 다 지방한테만 부담을 지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좀……

○**산림청장 임상섭** 위원님, 지자체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재원상의 문제로 지금 어렵다고……

○**문금주 위원** 지방이 재정이 더 어려워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불은 국고보조율이 60%, 사방사업은 국고보조율이 70%, 재선충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율이 70%라서 다른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율보다 산림재난 분야의 보조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높은 편이고요. 이 조항도……

○**문금주 위원** 이 진화장비 같은 것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최소 50% 이상은 반드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추가로 심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선교 위원님 계신데 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농업민생 4법이 국무회의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부의 법안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아무래도 올해, 작년, 재작년 산불 재난 사태가 워낙 커서 이 법안은 그래도 심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법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 유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전문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 대응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은 재난안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66쪽입니다.

산불 조심기간과 산사태 조심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산사태의 경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장 소속으로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산사태 조심기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산사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참고 표시 보시면 벌칙 수준은 유사 입법례인 사방사업법에 맞추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산사태 긴급점검과 70페이지 산사태대응팀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수정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7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은 법제적인 수정 사항을 정리하였고요.

72페이지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산림청장이 특별방제구역 지정 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희용 의원안은 해당 산림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은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국민한테 침해적인 성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 규정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산불조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산불조사의 정의에 감식·감정·실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소방청은 화재조사법에 따른 화재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산불조사 기관이 협조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조사와 화재조사는 각각 산림보호법과 화재조사법에 근거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상하위의 위계가 개념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

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불 대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산불조사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7페이지 산사태 발생지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산사태 발생 원인 등 조사 결과 추가적인 불과의 위험이 있을 때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긴급복구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은 사방사업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하되 사유림의 경우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피해 복구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절차나 동의에 갈음하는 공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산림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임도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타 법에서 이미 그 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80페이지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은 기상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1페이지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과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공단에 연구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2페이지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의 입법 목적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공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단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정안들은 산림재난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정안들은 공단의 설립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입법례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설립 방식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그다음에 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합·전환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안 부칙에서 공단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동그라미 중에서, 제정안들은 공단의 이사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해서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례가 거의 없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6페이지 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87페이지 공단의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입니다.

제정안들은 공단이 국유재산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의 운영비 관련해서 기재부는 신설된 공단이 승계하게 되는 협회 등이 원래 당초에 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융자금 등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8페이지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법제상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91페이지부터 보칙 사항입니다.

산림재난보험 등 가입과 92쪽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법제상 보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94페이지 권한 등 위임·위탁 규정 중에서 산림재난감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체계상 이것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직접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5페이지 산림재난방지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사실 통보나 징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 등이 가능하고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 등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을 수용하신다면 일부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입니다.

산림청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감사원법 등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 별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사항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101페이지 별처 및 과태료입니다.

고의적 산림 방화범에 대한 벌칙 규정인데 아래의 표에 법률안 간의 징역형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이만희 의원안의 경우가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과 이만희 의원안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산림보호법 등에서 보호수 등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해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균형에 반할 소지가 있다

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3페이지 과태료 사항입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 다른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의 균형, 산림청의 수용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과태료 상한액을 비교해 놨는데 정희용 의원안은 현행 산림보호법과 동일하고 이병진 의원안, 조경태 의원안은 과태료가 가장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는 유사 입법례를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고요.

부칙 2조에 제정안들은 공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칙 3조를 신설해서 공단 설립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통합되는 치산기술협회,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권한과 의무, 재산 등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임원 같은 경우에 만약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경과조치는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안은 타 법 개정으로 치산기술협회와 산불방지기술협회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 동그라미 보시면 산림청은 사방사업 규정은 존치하고 공단이 설립되면 그 이후에 사방사업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공단 설립과 동시에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시행상 혼란이 초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희용 의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대부분 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산사태 발생지 복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해당 조문 중 제2항제2호에 정당한 사유가 불명확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경우에 부동의 때문에 복구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87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대부, 사용·수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공단으로 통합되는 3개 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거나 양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 양여로 규정하고 있는 수정의견 제3항하고 제4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추후에 무상 양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때 추가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공단과 관련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쟁점으로 분류해 놓고 다음 법안을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87쪽인가요?

77쪽, 산사태와 관련해서 복구를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넣고 여기서는 빼자 이런 의견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복구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당장에 필요한 내용들이 소위—항구적 복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산사태가 바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거고,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는 복구가 있을 거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명칭이, 복구라는 개념이 사용됐다고 해서 그것은 현장의 재난과 시간적으로 연계되거나 긴급성이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재난과 관련돼서는 복구가 여기 ‘시급히 복구해야 된다’는 말에서 ‘시급히’라는 말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재난과 관련된 복구는 사실은 시급히 실행해야 되는……

○**윤준병 위원** 내용에 따라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복구조치도 있을 거고 또 이후에 뒤따르는 내용에 당장에 수반되어야 될 응급복구랄까 긴급복구랄까 여기에 있을 텐데 그냥 복구 내용은 재난과 좀 연관성이 적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내용은.

그래서 복구라는 개념은 사실은 예전에 있던 사방사업법 내용에 보면 그게 오히려 연관성이 더 있는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쪽에다가 조문화해 갖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산사태와 관련된, 일관성이 좀 결여되는 오히려 단절되는 효과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구를, 재난 피해가 났을 때 복구라는 것은 말씀하신 응급복구라고 해서 긴급하게 하는 거랑 항구적으로 하는 항구복구랑 또 그 이후에 생태계나 산림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률에서 하는 복원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그러면 지금 정희용 의원 법안하고 이병진 의원 법안 심사가 쟁점을 남겨 놓고 일독은 다 한 거지요?

이제 좀 결정을 해 가야 되는데 아까 공단 설립 관련해서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접경지의……

○**산림청장 임상섭** 건축 허가……

○**소위원장 이원택** 건축 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접경지 건축 허가 문제는 사실 그 위치

가 심각하다는 것을 안내·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안내·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산림청장 임상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산림청장 임상섭 임호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강제 조항이 1항은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삭제된 2항과 4항을 다시 살려 주시면 충분히 취지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2항과 4항을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내용이 뭐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건축……

○임호선 위원 31쪽에 있습니다. 조문자료 31쪽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심사자료 2의 31쪽에 있는데 31쪽의 2항을 보시면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 등 중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받으면 그 건축물 등 시공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항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의 부담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지 지금 개정안처럼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검토해야 될지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어떤가요?

○임호선 위원 그것은 수정의견처럼, 지방산림청장으로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저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즉시 알려야 되고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정도로, 임호선 위원님 국민의 재산권, 기본권 과도한 침해 문제는 조금……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박덕흠 위원님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쟁점이 해소된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공단 설립 부분을 조금 빼고, 제가 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시킬 법에서는 빼고 차후에 조금 개정안을 내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제정된 지, 저번 회기 때부터 계속 미뤄 와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제정해서 시행해도 내년, 1년 후에 해야 되는데 내년 봄철 산불도 좀 대비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는 것보다 쟁점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좀 오늘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 어떻게 쟁점사항 해소 않고 마무리를 지어?

○산림청장 임상섭 그리고 지금 이 공단은 설립한다로 돼 있지 않고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기재부처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뭐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많으신데요. 상근으로 하는 임원이 지금 3개 기관에 5명인데요 통합하게 되면 2개로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뭐 청장님의 선의만을 믿을 수는 없고 청장님 지나면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거니까. 또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권력자, 그 위에 권력자들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거니까 그건 제도화를 해 버리든지 그래야지 선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산림청장 임상섭** 하여튼 제 의견은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사실 지금 정희용 의원안하고 그다음에 이병진 의원안에서 공단 설립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빼고 법안심사를 종료할 건지 아니면 이걸 넣어서 심사를 할 건지인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다소 공단 설립이 어떻게 보면 산림청 입장에서 이번이 아니면 또 사실 많은 논란과 시행이 언제될지 너무 미루어지는 감이 있고 또 공단 설립이 되면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산림청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여러 기관 합쳐 가지고 공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마이크 잡고 하셔요. 전종덕 위원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종덕 위원** 치산협회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3개 기관인가요—합쳐서 공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공단은 아니고 3개 협회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공단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합쳐 가지고……

○**전종덕 위원** 만약에 여기서 공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계속 3개의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재선충 모니터링센터에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전국에 재선충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산불방지기술협회 지금 진화 대원들 교육시키고 시설물 타당성·안전성 검사하는데 40명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설득을 할 때도 공단 만들 때 인력 안 늘려도 되니까 이 사람들 합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중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게 해 달라, 예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인원 증액도 더 필요 없습니다, 3개 뮤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3개 분야로 나눠진 걸 통합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기재부하고 설득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국민들 재산이라든지 생명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공감은 하는데요. 운영을 실제로 했을 때 지금 각각 이 협회가, 법인의 자본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인이 해산하고, 해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공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경과 규정에는 합치는 걸로, 3개를 다 합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산하고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권리를 승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에는.

○**임미애 위원** 그래도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글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산 규모가 다르고 하는데 서로 합치는 걸로는 얘기가 됐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없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임미애 위원** 뒤에 실무자이신 것 같은데……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잠깐 산사태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입니다.

저희가 공단이 설립돼서 법원 등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부칙 3조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을 할 때 법인의 이사회나 어쨌거나 내부에서 서로 다 얘기가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예, 그 전에……

○**임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자산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치산기술협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재선충 관리와 관련된 법인의 자산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예, 그런데 자산 규모는 모니터링센터하고 산불협회는 거의 협회 수준에서 거의 없고요. 치산기술협회만 건물이 있어서 그 자산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3개의 단체가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가 없고요.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한 상태라서……

○**임미애 위원**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어떤 운영을……

○**임미애 위원** 공단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보조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출연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자체수입금입니다. 타당성평가를 수주받아서 한다든가 다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보조는 안 해 주고요. 다만 그 병해충 모니터링 센터만 현재 한 79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현재 2개 기관도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우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가축 방역과 관련돼서 기관을 하나 설립하고 났더니 그 기관 종사자들의 95%가 계약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처우 내지는 위험수당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는 늘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그 부분은 협단체나 민간단체일 때는 저희가 개입이 어렵지만 이제 공공기관이 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직이나 예산은 다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나는 수입과……

○임미애 위원 통제는 받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흩어져서 산불 감시, 산사태 그다음에 병해충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계약직이었잖아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다 정규직입니다, 합치면 170명은요.

○임미애 위원 다 정규직으로 돼 있나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예.

○임미애 위원 그렇군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에 있는 그분들은 좀 있고요.

○임미애 위원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기관 운영에 대한, 신설되는 기관의 운영 계획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넘겼으면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장님의 다른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나오신 김에 운영 관련한 계약직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그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모니터링 센터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니까 어쨌든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1년 단위 계약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그리고 공단이 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예산, 조직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의해서 1년 동안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목표는 언제 설립하는 거예요?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지금 이 법이 1년 후에 시행이 되면요. 저희는 시행일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산사태방지과장 최현수 고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청장님, 9페이지에 보면 양쪽 다 170명이라고 그랬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 밑에 센터하고 본부 조직을 보면 17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재부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협의를 해 줬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또 이사는 상임인데 이것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교 위원 아니요, 숫자요. 170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다 포함됐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조직을 플러스해 보면 딱 170명인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은 경영지원본부나 본부에서 이사하고 감사하고 뺏어야 되는데 안 뺀 것 같고요. 170명이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옮겨 오면서 기재부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협의를 봐줬을 거고, 그게 공청회 때도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하고 예산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좀 의문이 가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이것은 자료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게 없으면 이제 결정하는 단계로 진입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청장님은 임미애 위원님께 공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건지,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어떻게 전환·운영되는 건지 또 이게 각각 산사태, 산불 또는 재선충, 산림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작동하는 건지 별도로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의 요청하는 것 있으면 잘 들어 주시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쟁점이 아까 인접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항을 다시 산림으로 살리는 형태로 해서 자체 없이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방산림청장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위원장님, 한 말씀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산림청장 임상섭** 약간 오탏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2항 삭제됐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임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신축이 빠져 있습니다. 증축부터 돼 있어 가지고 신축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신축.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 등의 증축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신축·증축·개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증축·개축·재축’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신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신축 들어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산불이 났을 때는 인접지역을 100m로 했는데 산사태는 어디까지가 인접지역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인접지역은 임야나 산지로부터 연접돼 있는 농지, 택지, 구거, 하천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킬로수나 미터수로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산불은 100m라고 딱 돼 있는데 산사태로 발생한 인접지역의 구분이 농지, 택지, 하천 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확장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제한을……

○**산림청장 임상섭** 적용 범위가 법 4조에는 산지와 잇닿은 토지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산사태 위험도 평가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만 운영할 겁니다. 법안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잇닿은 토지의 1개 필지가 굉장히 넓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고시된 지역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 인접된 토지가 결국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험도 평가로 해서 영향을 미칠 거리까지가 해당된다는 거지요,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서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취지를 살려서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또 무한대로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산사태 등급이 높은 지역과 중간 지역 또는 낮은 지역에 따라서 그 거리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영향이 큰 지역은 범위가 좀 더 넓을 거고 작은 지역은 좀 좁을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건 뭐냐하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건 인정하지만 또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취지를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른 쟁점 말씀하실 건 없지요? 그러면 우리……

○임미애 위원 토석류를 넣어 주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토석류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사방법인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이 법의 완결적 체계를 위해서 넣어 놓는 것으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그런데 사방법의 용어와 달리 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토석류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산사태 등’이라고 해서 산사태와 토석류를 합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님, 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47쪽의 산림재난대응단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결정해 줘야 될 것?

○전문위원 임재금 그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47쪽이요?

○소위원장 이원택 47쪽의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재난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재금 통합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희용 의원안 원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인지……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정부 측은……

○산림청장 임상섭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도 혹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문구 같은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셔도……

○소위원장 이원택 체계·자구 문제는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 없으면 방금 우리가 쟁점 토론하면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에서 동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재난방지법(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체계·자구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또 혹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더 하자는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계엄과 내란 또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복잡한 정국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림재난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작년·재작년에 너무나 큰 화재와 산사태,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 의견을 모아서 여기까지 심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 ○출석 위원(10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중덕 정희용

### ○첨가 위원(1인)

이만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